

##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현황 및 개선 연구\*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권종욱  
강원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박상문  
강원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Youth Labor Rights Ordinance in Chuncheon City

Tae-In Kim<sup>a</sup>, Jong-Wook Kwon<sup>b</sup>, Sang-Moon Park<sup>c</sup>

<sup>a</sup>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up>c</sup>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1, Revised 18 March 2021, Accepted 25 March 2021*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dinanc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to propos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ordinances of Chuncheon City. To this end, cases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youth labor rights, domestic laws and major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mainly utilized literatur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it was based on foreign laws and case analysis, domestic laws and ordinances, and preceding research and data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Findings** - Chuncheon city ordinances are superior to those of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ltation system are included in the project contents of Article 6, so it is not concrete and clear. And there were no articles related to the labor environment check.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is proposed to make the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plan, survey, and consultation system as independent provisions. It i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article related to the youth labor environment check.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detailed regulations by establishing the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Keywords:** Youth Labor Rights, City Ordinance, Chuncheon City

**JEL Classifications:** J48, I30, R50, R58

## I. 서론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조례증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노동(Child Labour)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법(Factory Act)이 등장한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시대의 열악한 아동 노동

\* 이 논문은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일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되었음.

<sup>a</sup> First Author, E-mail: tikim@kangwon.ac.kr

<sup>b</sup> Co-Author, E-mail: jwkwon@kangwon.ac.kr

<sup>c</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venture@kangwon.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환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송병진; 2014). 영국의 공장법은 아동과 여성을 위협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양동휴, 1985; 이영석, 1994). 영국의 아동노동 보호 관련 법령은 산업국가들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아동노동을 금지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Hindman, 2009).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유해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착취,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황진구, 유민상, 정유진, 2017).

일하는 청소년들의 8가지 노동기본권은 일자리에 대한 권리, 일할 조건에 대해 알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 학습에 대한 권리, 인격보호에 대한 권리, 참여에 대한 권리로 제시할 수 있다(황진구 외, 2017). 이러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시장, 학교, 그리고 NGO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청소년 노동기본권을 마련하고 또한 명시되어 있는 노동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제·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차원의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해외 입법사례와 국내 법률 및 중앙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춘천시 조례에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안함에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협약, 미국, 일본, 독일의 연소근로자 보호입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과 미국 사례에서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역별 범조항들과 특성들을 살펴보고, 일본의 사례에서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관련 법령과 정부 사업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의 주요 항목과 세부적인 내용, 관련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전달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반의 현황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세부 내용별로 분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내용과 보완할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례분석의 세부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빈도,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우수사업장, 실태점검, 상담체계, 인권센터설치의 분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외국 법령 및 사례분석, 국내 법령과 조례, 정부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근거하고자 한다. 국내 법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정책과 현장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반의 현황 분석을 통해 춘천시 조례에 반영할 세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청소년 노동인권 해외입법 사례 및 국내 법제현황

### 1. 해외 입법사례

「UN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타의 노동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협약(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2조에는 취업의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의 내용은 청소년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권, 안전권,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노동이 허용될 수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청소년노동의 보호를 위해 연령, 업무,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근로는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고용관련 규제내용은 매우 세심하게 서술되어 있다. 연방노동부 고용기준국에서는 청소년들의 고용에 관한 기본안내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sup>1)</sup> 미국의 「청소년노동법(Child Labor Laws)」<sup>42</sup>의 주요 목적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건강과 복지에 해가 되는 조건에서의 청소년고용을 제재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험직종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들이 청소년들을 장시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법으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은 민간부문과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에 전임제 혹은 시간제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기록 보존, 그리고 청소년의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기준법」에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기준법」상 ‘약년자(若年者) 즉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15세가 되지 않은 아동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노동기준법 제56조). 「연소자노동기준규칙」에서는 연소자의 고용허가,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의 해지, 교대제에 의한 심야업의 허가, 중량물의 취급, 연소자의 취업제한 업무범위, 연소자 취업 금지직종, 귀향여비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청소년노동보호법(Gesetz zum Schutz der arbeitenden Jugend, Jugendarbeitsschutzgesetz)을 두고 있으며, 동법은 18세 미만인 자의 고용(Beschäftigung)관계에 적용되며, 직업교육과정의 청소년, 취업청소년 또는 자영업청소년, 취업 또는 자영업의 근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기타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및 직업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갖는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 고용, 청소년 고용, 청소년 고용의 금지와 제한, 건강관리, 법률의 시행 관련과 처벌 및 벌금규정이 있다.

이상 해외입법 사례로 살펴본 연소근로자(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기회의 확대, 근로와 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세한 의무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연소근로자의 학습권 보장을 법제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기업에서 취업규칙으로 연소자 보호규정을 잘 지키고 있고, 학교의 사회 과목시간에 공식적으로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누구나 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을 당연시하고 준수하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소자 보호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같이 범용적인 노동관계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단행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단행법 제정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 2. 국내 법률 및 중앙정부 주요 정책

### 1) 청소년 노동기본권과 관련 법률 분석들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호와 관련된 법률 분석은 주로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노동과 관련되어 명시하고 있는 특정 법령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안선영 외, 2014; 황여정 외, 2015; 최상진, 2017). 이러한 방법은 해당되는 사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전체적인 틀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률 구조와 세부적인 내용, 관련 법률 상호간의 문제나 흠결을 파악하는 것에서 한계를 지닌다(황진구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계층적 특성과 법령 분석이라는 목적을 종합하여 청소년 노동기본권을 6가지 세부적인 영역, 즉 일자리에 대한 권리, 일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 정당한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권리, 노동권 침해 예방과 회복 관련 체계에 대한 권리, 노동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일자리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였다. 그 후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내용 및 관련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청소년 노동기본권 영역과 항목 및 세부내용은

1) 14세 미만은 개인 가정에서 집안을 하거나 보조 일 등, 14~15세는 사무실, 식료품점, 소매상, 식당, 위락시설, 16~17세는 위험하지 않은 모든 일(노동부장관이 위험직종으로 분류하지 않은 직종), 18세부터는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다.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법령 중심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영역과 세부내용

영역(안)	항목	세부 내용	관련 법령
1. 일자리에 대한 권리	1) 모집·채용·노동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②노동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직업안정법
	2) 편찮은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①좋은 일자리 제공 ②좋은 일자리 유지	-헌법 -직업안정법
2. 일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	1)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①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노동조건 기준 마련 ②노동3권 보장 ③노사협의회 설치 ④강제노동 금지 ⑤정신적, 육체적 폭력 금지 ⑥폭력 및 폭언으로부터의 보호 ⑦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헌법 -아동권리협약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권리	①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②위약예정 금지 ③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①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 ②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제한 ③독자적 임금청구 ④임금체불 금지 ⑤가산임금 보장 ⑥금품 청산 기간 설정	-헌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 적절한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①적정 노동시간 ②연장·야간 및 휴일 노동 제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5) 충분한 휴식에 대한 권리	①휴게·휴일·휴가권 보장 ②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 보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3. 정당한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권리	1) 정당한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	산업재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4. 노동 기본권 침해 예방과 회복 관련 체계에 대한 권리	1) 심신의 안녕과 건강 등을 위협하는 일자리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①최저연령 및 취직인허증 ②유해·위험한 사업 고용 금지 ③유해·위험한 일자리 소개 금지	-헌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아동권리협약
	2) 교사·고용주·청소년 지도사 등에 대한 노동법 및 인권 교육 의무화	①교사 직무 연수 ②청소년 고용주 대상 교육 ③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가 등 청소년 접점 활동가 대상 교육 ④근로감독관·청소년 담당 등 공무원 대상 교육	-관련 법령 미비
	3) 빠른 권리 회복을 위한 체계에 대한 권리	①청소년 중심의 상담·신고제도 및 운영체계 마련 ②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5. 노동기본권에	1) 노동기본권에 대해 교육 받을 권리	①공교육 교과 과정에 노동법과 다양한 수준의 노동기본권 내용 포함 ②진로 탐색, 자원 봉사, 실습 등	-아동권리협약 -청소년기본법

대해 교육받을 권리		기타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노동기본권 교육	
	2)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 받을 권리	①소규모, 직접 소통 방식의 교육 ②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관련 법령 미비>
6. 일자리와 노동정책 결정과정 참여 할 권리	1)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①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②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	-청소년기본법

출처: 황진구, 유민상, 정유진, 2017

특히, 노동기본권에 대해 교육 받을 권리는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정비하여 의무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 대상 또한 청소년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사, 청소년노동관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업주,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상담 과정에서 조력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황진구 외 2017).

## 2) 청소년 노동기본권과 관련 법률 시사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전체적인 현황 분석의 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동관련법은 헌법을 근간으로 개인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독일의 ‘청소년노동보호법’처럼 단일한 법이 있지 않고 각종 노동관련법과 청소년관련법 등에 산재하여 규정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노동시장 현장의 양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법률 규정이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노동참여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는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관련 법령의 경우 대부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노동기본권 보장제도 마련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일자리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보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법체계와 세부 규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직업교육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체계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넷째,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경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권리협약이나 청소년기본법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실제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사후 점검 미흡, 점검 시 미리 고지 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 준수 인식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섯째, 고용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노동기본권 교육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법·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고용주를 비롯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3) 중앙정부 주요정책 전달체계 분석

청소년 노동인권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 도우미를 연계하여 밀착상담, 현장방문, 노동권서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상담서비스, 근로권의 구제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업무관계 기관을 연계한 종합서비스, 찾아가는 근로권의 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 근로권의 전문상담사 양성, 청소년모바일안전망 구축 등이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표 상담전화를 위탁·운영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근로권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 및 권리구제기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기능,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기능, 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교육 등이다.

셋째,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노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근로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전달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노동기본권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이들 주제에서 노동교육이 다루질 수 있다. 또한 노동교육의 방향성 및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노동교육의 내용 영역과 하위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 등 교육과정상의 노동교육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III.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및 현황

### 1.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제정·시행되는 법률과 더불어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별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고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환경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서보진, 2012).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조례의 전반적인 현황은 2020년 10월 06일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검색어로 ‘청소년’을 사용한 경우 약 2,000여건, ‘노동’은 300여건, ‘근로’는 300여건의 조례가 검색되었고, ‘청소년 노동’의 경우는 약 60여건, ‘청소년 근로’는 약 24여건의 조례가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서 주요내용의 개요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총 61개의 조례(Table 2) 참조)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7%인 8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23.5%인 53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정된 건수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15건, 전남 9건, 서울 8건, 광주, 강원, 충남이 각각 5건 등으로 파악되었다.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조례가 파악되지 않았다.

**Table 2.**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조례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비율(%)
전체	8	53	61	100
서울	-	8	8	13.1
부산	1	2	3	4.9
대구	-	-	-	-
인천	1	3	4	6.6
광주	1	4	5	8.2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1	14	15	24.6
강원	-	5	5	8.2
충북	1	1	2	3.3
충남	-	5	5	8.2
전북	-	1	1	1.6
전남	1	8	9	14.7
경북	-	1	1	1.6
경남	1	2	3	4.9
제주	1	-	1	1.6

출처: 저자 재구성

### 1)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 및 시기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시기는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었던 시기와 비슷했다. 즉, 최초 제정된 사례는 2013년 6월 제정된 ‘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이며, 이후 매년 조금씩 제정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후 2016년에 5건(8.2%), 2017년 13건(21.3%), 2018년 5건(8.2%), 2019년 24건(39.3%), 2020년 14건(23%)이 제정 및 개정되어 대부분의 조례가 2016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로 볼 수 있다.

### 2) 조례의 목적과 주요 정의

국내 지자체들의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조례들의 주요 목적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으로 삼은 61건 모든 조례에서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례의 목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면에 일부(서울 광진구 및 동작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등)의 조례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헌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둘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정의와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는 거의 모든 조례(61건)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분석해 보면, 각 조례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명시하고 있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명시하는 경우가 73.8%, 9세 이상 24세 이하가 16.1%, 19세 미만이 14.8%, 18세 미만과 19세 이하가 각각 1.6%로 조사되었다.

**Table 3.**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조례의 청소년 연령

청소년 연령대	지방자치단체	단체수(%)
24세 이하	서울(8), 부산(1), 인천(3), 광주(5), 경기(10), 강원(4), 충북(1), 충남(2), 전북(1), 전남(7), 경북(1), 경남(2)	45(73.8%)
19세 이하	인천(1)	1(1.6%)
19세 미만	부산(2), 경기(4), 충북(1), 충남(1), 경남(1)	9(14.8%)
18세 미만	경기(1)	1(1.6%)
9세이상 - 24세이하	강원(1), 충남(1), 전남(2), 제주(1)	5(16.1%)

출처: 저자 재구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는 31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몇몇 조례에서는 ‘노동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장 책무와 시행계획, 실태조사

조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특성을 반영한 내용과 더불어 실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중요하며, 장기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세부적인 항목이 중요하다.

첫째,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단체장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61개 조례 모두에서 단체장 책무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책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자치단체장의 책무의 항목을 추상적 수준에서 2개만 제시한 사례부터 세부적인 내용으로 7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조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제시한 평균 항목 수는 4.5개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수립과 세부적인 사업의 명시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항목과 계획수립 주기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61개 조례 중 대부분의 조례가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항목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다. 추진사업이나 항목의 경우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평균 6.6개 정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61개 조례 중 51건(83.6%)로 나머지 10건의 경우는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행계획 수립 주기는 모두 1년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1개 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장기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4년으로 명시하여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 수립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나 노동 기본권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61개 조례 중 51건(83.6%)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었고 10개 조례에서는 해당되는 세부적인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태조사 시행 주기로는 3년(11개)과 5년(1개)으로 다양하며 평균 2.6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61개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주요 사업내용	비고
서울(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li> <li>3.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실태 조사</li> <li>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li> <li>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li> <li>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li> <li>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li> <li>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및 일자리 창출</li> </ol>	성북구, 강남구, 마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
부산(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li> <li>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권익 구제 체계 구축</li> <li>3.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개선활동</li> <li>4.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li> <li>5.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li> <li>6.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li> <li>7.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li> <li>8.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부산시, 중구, 영도구
인천(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li> <li>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체계 구축</li> <li>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실태 조사</li> <li>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li> <li>6.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li> <li>7.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li> <li>8.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li> <li>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인천시, 서구, 미추홀구, 동구
광주(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실태 조사</li> <li>2.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li> <li>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li> <li>4.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li> <li>5.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li> <li>6.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li> <li>7.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li> <li>8.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li> </ol>	광주시, 남구, 북구, 동구, 광산구
경기권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2.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 노동권익 지킴이 운영</li> <li>3. 청소년노동인권상담원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li> <li>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접수, 취업현황, 인식·실태 조사</li> <li>5.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li> <li>6. 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li> <li>7.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li> <li>8.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li> <li>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경기, 김포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의정부시, 광명시, 구리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강원권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li> <li>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li> <li>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및 실태조사</li> <li>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상담원 양성</li> <li>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사업</li> <li>6. 청소년 및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li> <li>7. 청소년 고용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li> <li>8. 청소년 사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li> <li>9.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원주시, 속초시, 동해시, 춘천시, 홍천군

<p>충북권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li> <li>2. 청소년과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li> <li>3.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li> <li>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li> <li>5.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li> <li>6.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충북,청주시</p>
<p>충남권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li> <li>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li>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li> <li>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노동환경 개선 홍보</li> <li>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상담원 양성</li> <li>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li> <li>7.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와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li> <li>8.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li> <li>9.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서산시,천안시,아산시,홍성군</p>
<p>전북권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교육</li> <li>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li> <li>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li> <li>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li> <li>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li> <li>6.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li> <li>7.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전주시</p>
<p>전남권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li> <li>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양성,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양성</li> <li>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상담·교육·홍보, 실태조사</li> <li>4.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및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li> <li>5. 청소년 작업장과 일터 육성</li> <li>6.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전남,목포시,무안군,영암군,해남군,강진군,여수시,장흥군,나주시</p>
<p>경북권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li> <li>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li> <li>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li> <li>4.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li> <li>5.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li> <li>6.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li> <li>7.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구미시</p>
<p>경남권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경제활동현황·인권침해 실태조사</li> <li>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근로권익 보호 준수 교육</li> <li>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구제, 상담원 및 교육 강사 양성</li> <li>5.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li> <li>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장 홍보활동</li> <li>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li> <li>8. 청소년 고용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포상</li> <li>9.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킴이단 운영</li> <li>10.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경남,창원시,양산시</p>
<p>제주권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li> <li>2.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li> <li>3.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li> <li>4.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li> <li>5. 청소년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li> <li>6. 그밖에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주시</p>

출처: 저자 재구성

#### 4) 민관협력 및 청소년 친화적 사업장 선정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관련 조례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61개 조례 중 43개 조례(70.5%)에 민관협의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관련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선언적 차원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15건(34.9%), 주요 구성인력 등을 포함한 경우가 26건(60.5%), 구성인력과 더불어 중요 기능 등을 명시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경우가 2건(4.7%)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조례의 경우 제3장 전체를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과 기능, 위원임기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각종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규정이나 제도를 준수하는 사업장 선정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조례는 분석대상 61건 중 56건(91.8%)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조례에서 해당 조항 내용이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고, 포상이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지자체도 있다. 반면에 경상남도의 경우는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 5) 점검 및 상담 구제 등 관련사업 전달체계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16건(26.2%)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별도의 조직을 갖춘 경우는 주로 노동인권점검단, 노동인권지킴이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기본권에 대한 상담이나 구제체계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갖춘 조례는 47건(77.0%)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전용전화 설치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었다.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달체계와 전달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사결과 61개 조례 중 33건 (54.1%)이 관련된 기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기관 명칭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노동인권 센터’였으며, 경기도와 성남시, 부천시, 그리고 군단위의 조례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설치와 사업, 업무협력, 운영의 위탁방법, 감독 등의 사항을 매우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Table 5.**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조례 종합비교(61개 조례)

지자체	책무	계획 수립	실태 조사	협의체	우수 사업장	점검	상담	센터
서울 (8)	(8) *2-6개	(8) *매년수립(5)	(8) *매년(4) 3(1),5(1)	(3) *민관협의체	(8) *선정홍보	(5) *인권보호단(4) *인권지킴이(1)	(6) *전용전화 *지원체계	(1)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부산 (3)	(3) *3-6개	(1)	(1)	(1)	(3) *포상(1)		(2)	(2)
인천 (4)	(4) *4-5개	(4)	(4)	(2)	(4)	(1)	(4)	(1)
광주 (5)	(5) *5개	(5) *매년	(5) *3년(1)	(5)	(5)	(3) *인권점검단(1) *인권지킴이(2)	(5)	(1)
경기 (15)	(15) *2-7개	(10) *4년(1)	(10) *4년(1)	(13) *위원회(2)	(11) *포상(1)	(1) *인권점검단	(8)	(11)
강원 (5)	(5) *2-4개	(5) *매년(1)	(4) *3년(1)	(3) *위원회(1)	(5) *포상(1)	(1) *인권보호단	(4)	(2)

충북 (2)	(2) *2-3 개	(2)	(1)	(2)	(2)		(1)	(1)
충남 (4)	(4) *2-4 개	(4)	(4) *5년(1)	(2)	(4)	(1) *인권지킴이	(4)	(2) *안심알바신 고센터(1)
전북 (1)	(1) *4개	(1)	(1) *3년	(1)	(1)	(1) *인권점검단	(1)	
전남 (9)	(9) *4개	(8)	(9) *3년(5)	(9)	(9)	(3) *인권지킴이단	(8)	(9)
경북 (1)	(1) *3개	(1)	(1)	(1)			(1)	(1)
경남 (3)	(3) *2-6 개	(1)	(3)	(1)	(3) *인증마크(1) *포상(1)	(1) *인권점검단	(2) *안심알바 센터(1)	(1)
제주 (1)	(1) *4개	(1)		(1)	(1)		(1)	(1)
합계	61	51	51	43	56	16	47	33

출처: 저자 재구성

## 6)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국가차원의 법률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 현황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참여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음. 여기서는 청소년 노동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61개 조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 광역자치단체(47%)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226개 중 53개 지방자치단체(23.5%)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지자체의 조례가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작성된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시행의 한계를 내재하는 원인 때문으로 보여 진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교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시행령을 갖춘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례의 명칭이나 정의 등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례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정의를 제시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보다 명확해지고, 실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의 모형이나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의 마련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조항 중 임의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로 조례의 내용이 실제 시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노동권보호를 위해 작동될 수 있는 규정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IV.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분석 및 개선방안

### 1. 춘천시 노동인권 조례 요약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2019.11.14 조례 제1497호로 제정되었고, 총 5개의

장과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61개 지자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조문 수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만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춘천시의 정책적 관심과 중요도가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5조(청소년의 권리),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보조금 지급)으로 구성된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 청소년 균형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사용자, 근로,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합법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근로환경에서 청소년 근로, 2) 해당 업무 소관부서 및 노동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 활동, 넷째,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 우선 실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4)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이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4가지는 1) 청소년의 교육 권리침해 및 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노동 지시 금지, 2) 청소년에게 법으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형태 금지, 3) 인격적 대우 및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행사 금지,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 성실 준수이다.

제5조 청소년 권리 3가지는 1)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3) 해고할 경우는 30일 전 예고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서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10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사업내용은 유사하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시장은 사업 수행 법인·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2장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설치), 제9조(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임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회의), 제14조(간사 등), 제15조(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5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임기 2년, 1번 연임가능)으로 구성된다.

제3장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제16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17조(사업),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0조(감독)로 구성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운영 가능. 센터는 8가지 사업을 수행하며 청소년 단체 및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가능하다.

제4장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은 제21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22조(포상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고 지원(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 등)가능하다.

제5장 보칙은 제23조(업무협력 등), 제2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5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대상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가능하다.

## 2.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총 25개 조문)는 강원도내 지자체(원주시, 속초시, 동해시, 홍천군)를 비롯해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조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세부적이다.

조례 목적(근거)의 경우, 춘천시는 청소년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강원도 4개 지사

체 중 1개(원주시) 지자체가 청소년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삼는 지자체가 서울은 2개, 경기도는 5개가 있었다.

시장책무의 경우, 춘천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2-6개), 경기(2-7개), 광주(5개), 강원(2-4개)와 비교하여 적지 않았다.

사업내용의 경우, 춘천시는 9개로 서울과 경기(4-8개), 광주(6-7개), 강원도 지자체 (5-7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계획수립의 경우, 춘천시는 사업내용에 계획수립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수원, 평택 제외), 강원도 지자체(원주 제외) 역시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광주시는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의 경우, 춘천시는 역시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기(수원 제외), 광주시(광산, 동구, 북구 제외), 강원(원주 제외)의 경우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실태조사는 매년, 3년, 5년의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춘천시 조례와 타 지자체 조례의 세부비교

	춘천시	서울(8)	경기(15)	광주(5)	강원(4)
목적 (근거)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 (대한민국헌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 (대한민국헌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장책 무	4개	2-6개	2-7개	5개	2개(홍천) 3개(동해) 4개(속초,원주)
사업내 용	9개	4가지(마포) 6-7가지 8가지(성북)	5-8가지	6-7가지	5개(홍천,동해) 6개(속초) 7개(원주)
시행계 획수립	사업내용에 포함	사업내용에 포함 -강남(5년),강동,광 진,동작,마포,성북( 매년수립)	사업내용에 포함 (10개 지자체) -수원(별도조문) -평택(별도조문 4년)	별도 조문 (매년수립)	사업내용에 포함 -원주(별도 조문, 매년수립)
실태조 사	사업내용에 포함	사업내용에 포함 -4개(매년 실시) -강남(5년 실시) -성북(3년 실시)	사업내용에 포함 (10개 지자체, -평택(4년) -수원(별도조문)	사업내용에 포함 -광산구 (별도조문,3년) -동구, 북구 (별도 조문)	사업내용에 포함 -원주(별도조문, 3년)
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	강동,마포,강동 (민관협의체 구성, 별도조문)	민관협의체구성 (11개 지자체) 위원회(성남,부천)	민관협의체구성	동해,원주 (민관협의체 구성, 별도조문)
우수사 업장	선정 및 홍보 (지정 표지판 교부), 포상	선정 및 홍보 (8개 지자체)	선정 및 홍보 (11개 지자체) 포상(경기도)	선정 및 홍보	선정 및 홍보 포상(속초시)
노동환 경점검		인권보호단(강동,광 진,금천,성북) 인권지킴이(마포)	인권점검단(수원)	인권점검단(광 주) 인권지킴이(광 산,북구)	인권보호단(속초)
상담체 계	사업내용에 포함 (상담/구제체계)	전용전화 통합지원체계	전용전화 통합지원체계 (8개 지자체)	전용전화 통합지원체계	상담 및 구제체계
청소년 노동인 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 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 터 (성북)	노동인권센터 (11개 지자체)	노동인권센터 (광주시)	노동인권센터 (원주)

출처: 저자 재구성

민관협의체의 경우, 춘천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며,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 역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청소년 친화적 사업장의 경우, 춘천시는 사업장 선정(표지판 교부) 및 홍보, 포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도 지자체 역시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규정을 두고 있었다.

노동환경 점검의 경우, 춘천시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서울(5개)과 경기(수원), 광주시(광주, 광산, 북구), 강원(속초) 일부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단 운영규정을 두고 있었다.

상담체계의 경우, 춘천시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기(8개), 광주, 강원에서 대부분 전용전화와 통합지원체계, 구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센터의 경우, 춘천시의 경우 관련 센터 운영 규정을 두고 있고, 서울(성북)과 경기(11개), 광주(광주시), 강원(원주)에서 관련 센터 운영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춘천시 조례는 목적의 근거가 명확하고, 시장책무와 사업내용, 협의체구성, 우수사업장,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 규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구성, 직무 등 세부규정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매우 구체적으로 잘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은 사업내용의 하위규정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수립 및 조사 간격(몇 년)이 불분명하고, 상담 및 구제체계 역시 사업내용의 하위로 포함되어 내용과 의미가 불명확하다. 또한 청소년노동환경점검과 관련된 내용규정이 없다는 것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춘천시 조례 개선방안

#### 1) 춘천시 조례 개선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총 25개 조문)는 강원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원주시, 속초시, 동해시, 홍천군과 비교해 내용과 구성면에서 완성도가 높으며,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조례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었다.

청소년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삼아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의 청소년의 정의가 명확하고,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내용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으며, 제8조 내지 제15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 규정이 명확하고 세부적이고, 제21조 우수사업장 및 제16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 규정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설치, 구성, 직무 등 세부규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향후 조례 개정시에 반영하면 더욱 완성도가 높은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이 제6조 사업내용의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계획수립 주기 및 조사 간격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된 조문 규정을 가진 서울 광진, 동작, 마포, 성북구, 수원, 평택, 광주시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고, 계획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간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역시 제6조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세부적인 내용과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된 조문 규정을 가진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고, 전용전화와 통합지원체계, 구제 체계 구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노동환경점검과 관련된 조문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독립된 조문규정을 가진 서울 강동구 조례 시행규칙, 광진, 금천, 성북, 수원, 광주 광산, 북구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 조문을 규정하고, 청소년노동환경점검 기관의 구성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울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와 같이 별도의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민관협의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환경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선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조례시행규칙을 신설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Table 7.**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선 방안

조문	현재	개선안
6조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제1호 시행계획수립, 제3호 실태조사, 제4호 인권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을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 - 9개호를 6개호로 축소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6개호로 축소 제6-1조 시행계획수립 등 - 수립주기 명확화 제6-2조 실태조사 - 조사 주기 명확화 제6-2조 상담 및 구제체계 - 전용전화와 통합지원체계 등 명확화
신설	-	제20-1조 청소년노동환경점검단 설치 - 점검단 기능 및 구성 등
조례시행규칙 신설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민관협의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환경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선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조례시행규칙을 신설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출처: 저자 재구성

## 2)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해외 입법사례, 국내 법률 및 중앙정부 정책 시사점, 지자체 조례분석 등을 모두 살펴보았다. 앞선 분석 내용들과 시사점을 어떻게 춘천시 조례개정에 반영하고 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에 합리적인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보호 기반 구축, 청소년 고용사업자 책임강화, 청소년 일자리 노동기반 조성이라는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증진 방안들을 세부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별도의 조문이나 기존 조문의 하위 규정, 그리고 조례시행규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보호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①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프로그램 강화, ②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구제 법률지원, ③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강화, ④ 청소년 노동존중 홍보캠페인, ⑤ 일반시민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홍보 등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최은희, 2016; 유형근, 2018; 김용기, 2019; 고혜림, 2020; 권일남 외, 2020; 김미옥 외, 2020).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학교 출강 세미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창구(하라인 등) 운영,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널(온라인, 모바일앱, 카카오톡) 및 다양한 현장방문 상담 창구 운영으로 접근성 제고, 청소년 노동존중 상가현장 캠페인(“가칭)확인하자 노동조건” 운영, 일반시민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물 게시 등이다.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자 책임강화와 관련하여 ① 우수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원, ② 청소년고용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지원, ③ 청소년 고용사업장 노동분쟁 예방지원, ④ 사업주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화, ⑤ 청소년 고용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임영식 외, 2011; 김형주 외, 2019). 구체적으로는 우수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원 시범사업 운영,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환경 지원 시범사업 운영, 청소년 고용 사업주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이수제를 통한 제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의식 제고, 청소년 고용사업장 수시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상습 위반 사업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셋째, 청소년 일자리 노동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① 양질 청소년 일자리 정보제공, ② 공공 청소년 일자리 창출, ③ 청소년 노동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청소년 노동인권 제도 및 조직 강화, 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운영 등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안선영 외, 2014; 안선영 외, 2020). 구체적으로는 양질 청소년 일자리 정보네트워크 “Happy Work”운영, 춘천시 청소년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유관기관 협의체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강화, 타지역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우수 사례 벤치마킹,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확대운영 등이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해외 입법사례와 국내 법률 및 중앙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춘천시 조례에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안함에 있다.

해외 입법사례를 통해 일하는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성, 기업에서 연소자 보호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그리고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단행법 시행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법률 및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청소년 노동관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과 청소년의 일자리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직업교육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것,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에 벌칙적용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 학교 교육과정상의 노동교육과 관련된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석을 통해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5%만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것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교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을 갖춘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조례의 명칭이나 정의 등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조례의 조항 중 임의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춘천시 조례분석을 통해 제6조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시행계획수립 주기 및 실태조사 간격, 상담 전용전화 및 구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별도의 조문으로 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노동환경점검 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 역시 제안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민관협의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환경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선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조례시행규칙을 신설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앞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들과 시사점을 어떻게 춘천시 조례 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또한 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에게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결과적으로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보호 기반 구축, 청소년 고용사업자 책임강화, 청소년 일자리 노동기반 조성이라는 크게 3가지 분야에 있어서 15가지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15가지 세부정책과제가 향후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별도의 조문이나 기존 조문의 하위 규정, 그리고 조례시행규칙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해 본다.

향후 연구에서 실태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한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도출되고 이들 자료 분석을 통해 춘천시 청소년 노동의 개선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고혜림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전문가의 인식과 실천 유형화.
- 권일남, 전명순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2), 53-79.
- 김미옥, 조아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을 통한 삶의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1), 27-52.
- 김용기 (2019),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화와 권리찾기 지원의 체계화를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찾기 지원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열린총남, 86, 56-59.
- 김형주, 이종원 (2019),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4.
- 송병건 (2014), 굴뚝청소 아동의 재해와 사회적 대응, 영국 1750-1875. 영국연구, 32, 99-131.
- 서보건 (2012),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시의회의회안발의 조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2, 429-458.

-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13.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20),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13.
- 양동휴 (1985), 영국 산업혁명의 연소노동. *외국문학*, 1985(6), 172-197.
- 유형근 (2018),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평가-전국 조사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3), 131-159.
- 이영석 (1994),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서울: 한울.
- 임영식, 정경은, 김윤나 (2011), 비진학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와 정책 방안. *청소년학연구*, 18(12), 583-608.
- 최은희 (2016), 충북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과제. 연구보고서, 1-89.
- 최상진 (2017),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자료집* 17-S45, 31-40
-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진구, 유민상, 정유진 (2018),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45.
- Hindman, H. D. (2009), *The World of Child Labour: An Historical and Regional Survey*. New York: ME Sharpe.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